

<b>현 장 확 인 서</b>					처리기간			
					지체없이			
요청인 또는 신고인	성 명		생년월일		대상자와의 관계			
	주 소	(연락처: )						
위기상황	<div style="display: flex; flex-wrap: wrap;"> <div style="width: 50%;"> <input type="checkbox"/> 제1호 주소득자(主所得者)사망·기출등의 사유로 소득상실  <input type="checkbox"/> 제3호 가구구성원으로부터의 방임·유기·학대  <input type="checkbox"/> 제5호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주거곤란  <input type="checkbox"/> 제7호 주(부)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상실  <input type="checkbox"/> 제9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(이혼)  <input type="checkbox"/> 제9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(출소)  <input type="checkbox"/> 제9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(복지사각지대발굴)  <input type="checkbox"/> 제9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(자살고위험군)  <input type="checkbox"/> 제9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(코로나19 자영업자 등)                 </div> <div style="width: 50%;"> <input type="checkbox"/> 제2호 중한 질병 또는 부상 당한 경우  <input type="checkbox"/> 제4호 가구구성원의 가정폭력·성폭력 피해  <input type="checkbox"/> 제6호 주(부)소득자의 휴폐업 등으로 실질적 영업곤란  <input type="checkbox"/> 제8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  <input type="checkbox"/> 제9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(단전)  <input type="checkbox"/> 제9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(단기 노숙)  <input type="checkbox"/> 제9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(통합사례관리)  <input type="checkbox"/> 제9호 보건복지부 고시사항(코로나19 무급휴직자)                 </div> </div>							
긴급지원 대상자	대상자와의 관계	성 명	생년월일	동거여부 및 미동거사유	건강상태 (장애, 질병)	직업	월소득	비고
	본인							
※ 표에 미기재된 가구원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등 등초본 확인 후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지원 결정								
현장확인 내용	□ 지원필요	<input type="checkbox"/> 생계지원 <input type="checkbox"/> 의료지원 <input type="checkbox"/> 주거지원 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<input type="checkbox"/> 교육지원 <input type="checkbox"/> 그밖의지원 ( <input type="checkbox"/> 연료비 <input type="checkbox"/> 전기요금 <input type="checkbox"/> 장제비 <input type="checkbox"/> 해산비 )						
	□ 타지원연계	<input type="checkbox"/> 국민기초수급자 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복지공동모금회 <input type="checkbox"/> 보건소(암, 희귀난치성질환 등) <input type="checkbox"/> 지자체 자체 지원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 민간기관·단체 연계지원 <input type="checkbox"/> 대한적십자사 <input type="checkbox"/> 교육청 차상위 교육급여 <input type="checkbox"/> 한부모가족지원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<input type="checkbox"/> 차상위 의료비 경감대상자						
	□ 지원불필요	<input type="checkbox"/> 위기상황비해당 <input type="checkbox"/> 소득기준초과 <input type="checkbox"/> 총재산기준초과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일사유의 기지원 <input type="checkbox"/> 금융재산기준초과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<input type="checkbox"/> 타지원연계						



## 소득·재산 신고서 [□신규 □변경]

\* 아래 소득, 재산, 부채 사항 중 음영부분은 정보시스템을 통한 조회 결과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.

가구원 성명 <sup>1)</sup>						
소득 사항	근로 소득	상시근로	원	원	원	
		일용근로	원	원	원	
	사업 소득	농업소득 (주재매작물명)	원 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	원 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	원 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	원 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
		임업소득	원	원	원	원
		어업소득	원	원	원	원
		기타(자영업)	원	원	원	원
	재산 소득	임대소득	원	원	원	원
		이자소득	원	원	원	원
		연금소득	원	원	원	원
	기타 소득	정기지원 사적이전소득 (□무료임대)	원	원	원	원
공적이전소득 <sup>2)</sup>		원	원	기 타 (지자체 지원금등)	원	
재산 사항	건축물 (주택, 건물, 시설물)		원	토 지	원	
	선 박		원	입목재산	원	
	항공기		원	어업권	원	
	자동차		<input type="checkbox"/> 차량명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 <input type="checkbox"/> 용도 (생업용/장애인용/자가용)			
	임차보증금		<input type="checkbox"/> 전·월세보증금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원) <input type="checkbox"/> 상가보증금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원)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원)			
	금융재산		원			
	등 산	<input type="checkbox"/> 소 (    마리,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원)		분양권		원
		<input type="checkbox"/> 돼지(    마리,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원)		조합원 입주권		원
		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가축(    마리,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원)		회원권		원
	기타 산정되는 재산	소계 (A-(B+C+D))		원		
(A) 일정기간 <sup>3)</sup> 이내에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가액		원				
(B) 다른 재산의 구입금액		원				
(C) 부채 상환액		원				
(D) 의료비 등 개별가구원이 소비한 금액		원				
부 채	금융기관 대출금		원	금융기관외 기관 대출금		
	임대보증금		원			
	개인간 부채		<input type="checkbox"/> 판결문·화해·조정조서에 의한 사채 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원)			
가구특성 지출비용 <sup>4)</sup>		<input type="checkbox"/>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지출한 월평균 의료비 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원) <input type="checkbox"/>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에 따라 받은 재활보조금·피부양보조금 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원) <input type="checkbox"/> 국민연금보험료 본인부담분의 75%에 해당하는 금액 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원) <input type="checkbox"/> 대학생 본인의 근로·사업소득 중 월평균 등록금 지출 비용 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원)				
위와 같이 소득·재산 내역을 신고합니다.						
신청인(대리신청인):					년    월    일 (서명 또는 인)	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·교육감 귀하						

1) 별지 제1호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(변경) 신청서에서 작성한 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가구원 성명  
 2) 공적이전소득 : 법령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·연금·급여·기타 금품  
 3) 기초연금, 장애인연금은 2011년 7월 1일 이후 / 기초생활보장은 2021년 7월 1일 이후(다만,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처분한 재산은 조사일로부터 5년)  
 4) 가구특성지출비용 : 소득명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가구특성 지출비용이 되는 금품으로 기초생활보장만 해당됨.



# 금융정보 등(금융·신용·보험정보) 제공 동의서

## 1. 지원대상자 가구 세대주 인적사항

관계	성명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 등)

## 2.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(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)

※ 유의사항: 인감으로 동의할 경우 인감증명서 제출이 필요합니다.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(인감 포함)으로 대신합니다.

세대주와 의 관 계	동의자 성 명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 등)	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<sup>(1),2)</sup> (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·인감)	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에 동의함 <sup>3)</sup> (한글정자 서명 또는 무인·인감)

- 1) 지원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, 맞춤형 급여 안내,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·국토교통부장관·교육부장관·여성가족부장관·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·특별시교육감·광역시교육감·특별자치시교육감·도교육감·특별자치도교육감(관련법에 따른 위탁 업무수행 기관장 포함, 이하 '보건복지부장관 등' 이라 한다)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- 2)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계좌 명의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- 3)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. (만일 동의하지 않으면,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. 단, 기초연금의 경우는 별첨서식 「금융정보 등 제공 사실 통보요구서」를 추가로 제출하여야만 통보됩니다.)

## 3.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,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: 뒷면 참조

4.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: 동의서 제출 후 신청 서비스 자격 결정 전(맞춤형 급여 안내,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서의 유효기간)까지, 자격 취득한 경우에는 자격상실 전 까지

5. 정보제공 목적: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,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, 「기초연금법」, 「장애인연금법」, 「긴급복지지원법」, 「청소년복지 지원법」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, 「장애인복지법」, 「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」, 「아이돌봄지원법」, 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」, 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의료급여법」, 「주거급여법」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·확인조사 지원, 맞춤형 급여 안내 및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위한 수급가능성 확인, 별지 제1호 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

2 0 0 0 년 0 0 월 0 0 일

금융기관장 · 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

금융기관 등의 명칭

1.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
  - 1)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
  - 2) 「중소기업은행법」에 따른 중소기업은행
  - 3) 「한국산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산업은행
  - 4) 「한국수출입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
  - 5) 「한국은행법」에 따른 한국은행
  - 6)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투자매매업자·투자중개업자·집합투자업자·신탁업자·증권금융회사·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
  - 7) 「상호저축은행법」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
  - 8) 「농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
  - 9) 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
  - 10) 「신용협동조합법」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
  - 11) 「새마을금고법」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
  - 12) 「보험업법」에 따른 보험회사
  - 13) 「우체국예금·보험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체신관서
  - 14) 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
2.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: 전국은행연합회 등

금융정보 등의 범위

1. 금융정보
  - 1) 보통예금, 저축예금, 자유저축예금, 외화예금 등 요구불 예금 : 3개월 이내 평균 잔액, 3개월 입금액 총액\*  
\* 기초생활보장제도만 해당
  - 2) 정기에금, 정기적금,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: 예금의 잔액 또는 총 납입액
  - 3) 주식, 수익증권, 출자금, 출자지분, 부동산(연금)신탁 : 최종 시세가액
  - 4) 채권, 어음, 수표, 채무증서, 신주인수권증서, 양도성예금증서 : 액면가액
  - 5) 연금저축 :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
  - 6) 1)부터 5)까지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, 배당 또는 할인액
2. 신용정보
  - 1)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
  - 2)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
3. 보험정보
  - 1) 보험증권 :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
  - 2) 연금보험 : 해약할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

유의사항

-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·기피할 경우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2조제8항, 「기초연금법」 제11조제4항, 「장애인연금법」 9조제8항,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의3제3항, 「주거급여법」 제14조, 「아이돌봄지원법」 제24조제3항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12조의4에 따라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.
- 이 동의서는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5조,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1조, 「기초연금법」 제10조, 「장애인연금법」 제8조 및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11조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0조의2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0조의5,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의3제2항, 「주거급여법」 제9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됩니다.  
향후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및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3조 및 「기초연금법」 제11조제2항, 「장애인연금법」 제11조,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의3제3항, 「주거급여법」 제11조에 따른 확인조사의 경우에는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- 동의자(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)의 금융정보 등은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2조제6항 및 제23조의2제6항, 「기초연금법」 제12조제6항, 「간접복지지원법」 제13조제7항 및 「장애인연금법」 제9조 제6항 및 제12조제6항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12조의3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0조의3제6항, 「장애아동 복지지원법」 제15조제6항,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의3제3항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60조의6, 「주거급여법」 제15조제6항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급여 지급계약 유효성 확인을 위한 금융재산 등의 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아니하며,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54조 또는 해당 법률의 벌칙규정을 적용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



## 긴급지원수급계좌 입금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	즉시
신청인 (지원대상자)	성 명	생년월일	
	주 소		(전화: )
긴급지원 수급계좌	금융기관	예금주	
	계좌번호		

「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」 제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긴급지원금을 긴급지원수급계좌로 지급하여 줄 것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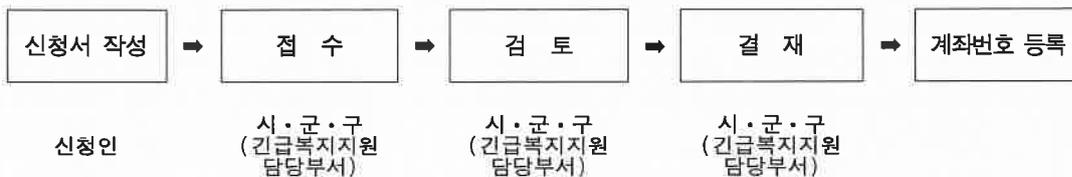
신청인:

(서명 또는 인)

###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계좌번호가 표시된 긴급지원대상자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1부
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### 처 리 절 차





##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

1. 이용기관 명칭 : 경상남도 김해시

2. 이용사무(이용목적) : 주민생활지원대상자 조사 및 관리

3. 공동이용 행정정보(구비서류)

연번	행정정보명	연번	행정정보명
1	개인별부과고지산출내역서(근로자개인별월평균보수)	7	폐업사실증명
2	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	8	휴업사실증명
3	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(상용)	9	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
4	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	10	병적증명서
5	사업자등록증명	11	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
6	산재보험급여지급확인원	12	해외이주신고확인서

※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.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.(필요시 기재사항)

(  주민등록  여권  외국인등록  운전면허 ) 번호 :

4. 정보주체(본인) 동의사항

○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(공동이용 행정정보)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※ 만일,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대상자    본인

성    명 :

(서명 또는 인)

생년월일 :

전화번호 :

## 금융재산 및 사보험 가입 관련 확인서

○ 신청자 인적사항

- 성           명 :
- 생   년   월   일 :
- 주           소 :

상기 본인은 긴급복지지원 신청함에 있어 본인 및 가족명의로 되어 있는 금융재산(현금,수표,어음,주식,증권,예금,적금 등)이 600만원 이하 임을 확인합니다.

긴급의료비 신청 시 사보험(질병,상해 등)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,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대상이 제외됨을 담당자로부터 안내받았습니다.

향후 조사결과 상기 사실과 다를시 모든 책임을 질것이며, 기 지원받은 긴급지원비를 모두 반환할 것을 서약 합니다.

위 확인자 성명

(서명 또는 인)

김해시청 귀하

## 2023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소득·재산 체크리스트

성명					생년월일					
주소										
주거형태	자가		전세		월세		무료 임차		기타	

1. 소득은 아래 표의 가구원수 기준 이하입니까?

예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 아니오

\* 소득 기준

가구규모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
원/월	1,558,419	2,592,116	3,326,112	4,050,723	4,748,016	5,420,986

2. 재산은 15,200만원 이하입니까?

예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 아니오

3. 금융재산(현금, 수표, 어음, 주식, 국공채등유가증권, 예금, 적금, 부금, 수익증권)600만원 이하입니까?

※ 단, 주택청약저축, 보험 제외

예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 아니오

위의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.

. . .

긴급지원대상자

(서명 또는 인)

김해시장 귀하